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당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청약하신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19.07.24~19.07.26, 10시~16시) 가능.
-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재당첨 정보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2019.07.16(화)~2019.07.21(일) 6일간, 10:00~16:00

■ **장 소** :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견본주택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98번지) ※ 견본주택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당첨구분별 필요서류가상이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안 될 경우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추가/해당자)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추가/해당자)	본인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및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공급신청자가 만19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거나,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 입양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만 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소득증빙구비 서류 (만 19세이상 세대원)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장(일반)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일반공급(추첨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공동서류 준비		

※ 공동서류 및 당첨구분별 해당서류가 중복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 과 상기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배송 주소 편입상 오류로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우편물이 오배수 될 수 있으니 당첨여부는 반드시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hillstate-hec.co.kr/central)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